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23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13650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지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김○○
피고, 피항소인	○○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구합7621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3.
판 결 선 고	2024. 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23. 원고에게 한 취득세 17,298,75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23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대부분 일반 주거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거리에 사는 일반 신도들이 숙식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종교단체가 신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숙소용 부분을 비롯하여 종교지원시설용 또는 창고용으로 이용되는 부분들 역시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분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23

판사 차○○

판사 이○○